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4. 21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1년 4월 8일
- 나. 발 의 자: 정선희 의원 외 4명
- 다. 회부일자: 2021년 4월 12일
- 라. 상정일자: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4. 1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정선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 유지 취약계층인 자영업자를 누수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의 근거 현행화 (안 제2조)
-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(안 제4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
 -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경기침체, 매출감소 등으로 폐업에 이르고 있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 - 안 제2조제1호의 소상공인의 정의에서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정(시행 2021.2.5.) 및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(시행 2021.2.5.)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음.
 -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, 취업,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조항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사업장이 영등포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하였음.

현행 조례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근거만 있어, 본 개정안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 특히 집합금지,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는 폐업이 빈발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검토 결과
 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원 대상,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정선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2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1년 4월 8일

발의자: 정선희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 유지 취약계층인 자영업자를 누수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의 근거 현행화(안 제2조)

나.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나. 협의 : 일자리경제과

다. 입법예고 : 2021. 4. 8. ~ 4. 13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”를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)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(이하 “폐업 소상공인”이라 한다)의 사업정리, 취업,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,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영등포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<u>소상공인 기본법</u>」 제2조----- ----- 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4조의2(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)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(이하 “폐업 소상공인”이라 한다)의 사업정리, 취업,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,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영등포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.</u></p>